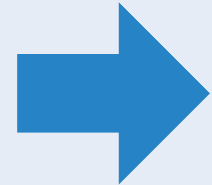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전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표*

구분	원산지	트럼프 2기 추가 관세							기존 적용 관세 ²⁾			
		제232조 품목별 관세			IEEPA 국가별 관세		관세부과율	부과 구조	통상법 ³⁾ 제301조	기본관세 ⁴⁾ 자유무역협정(FTA)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동차·자동차부품 ¹⁾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목재 및 파생상품	마약·이민	상호관세						
자동차·자동차 부품	한국·EU·일본	15%					15%	+ 품목별 관세	+ 25~100% (전기차)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5%			10%		35%					
	베트남	25%					25%					
	캐나다·멕시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충족	① 완성차 조건·상무부 승인 대상·비미국산 부품만 25% ② 자동차 부품 0%				① 완성차 비미국산 부품만 25% ② 자동차 부품 0%					
		USMCA 미충족	25%				25%					
철강·알루미늄	한국·EU·일본·베트남		50%(철) 50%(알)			50%	+ 품목별 관세 (함량 가치)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10%		함량(50%)+펜타닐(10%)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50%	
		USMCA 미충족										
철강·알루미늄·반가공 구리 파생상품	한국·EU·일본		50%(철) 50%(알) 50%(구)			15%	+ 품목별 관세 (함량 가치) + 국가별 관세 (비함량 가치)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10%	10%	함량(50%)+펜타닐(10%)						
	베트남				20%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USMCA 미충족			캐나다 35%							
					멕시코 25%							
목재 및 파생상품	한국·EU·일본			10 or 15%		10 or 15%	+ 품목별 관세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10 or 25%	10%	(10 or 25%) +10%						
	베트남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10 or 25% ⁵⁾						10 or 25%	
그 외 제품	한국·EU·일본					15%	+ 국가별 관세	+ 25% or 50%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10%	10%					20%	
	베트남					20%					20%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0%	0%
		USMCA 미충족				캐나다 35%						캐나다 35% (에너지 10%, 칼륨 10%)
					멕시코 25%		멕시코 25% (칼륨 10%)					



2026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

구분	원산지	트럼프 2기 추가 관세				기존 적용 관세 ²⁾			
		무역확정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	무역법 제122조 전면 관세	관세부과율	부과 구조	통상법 ³⁾ 제301조	기본관세 ⁴⁾ 자유무역협정(FTA)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동차·자동차 부품	한국·유럽연합(EU)·일본	15%		15%	+ 품목별 관세	+ 25~100% (전기차)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중국	25%			25%					
베트남	25%			25%					
캐나다·멕시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충족		① 완성차 조건·상무부 승인 대상·비미국산 부품만 25% ② 자동차 부품 0%		① 완성차 비미국산 부품만 25% ② 자동차 부품 0%				
	USMCA 미충족		25%		25%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중심 (부속서 1-A)	중국	50%		50%	+ 품목별 관세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영국	25%		25%					
	그 외 국가	50%		50%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중심 (부속서 1-B)	중국	25%		25%	+ 품목별 관세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영국	15%		15%					
	그 외 국가	25%		25%					
산업기계·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 (부속서 3)	중국	15%		15%	+ 품목별 관세	+ 7.5% or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러시아·벨라루스·쿠바·북한	25%		25%					
	그 외 국가	15%		15%					
반도체 및 파생상품	한국·EU·일본				+ 품목별 관세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베트남			25%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USMCA 미충족								
그 외 제품	한국·EU·일본				+ 전면 관세	+ 25% or 50%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10%	10%					
	베트남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0%
		USMCA 미충족		10%					10%

* 기발표 내용을 기초로 변경된 관세율 반영(작성일자: 2026.04.13.)

1) 한국은 EU·일본과 동일한 15%로 합의(MFN 포함, 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
버스 및 기타 차량(제8702호: 운전자 포함 10명 이상 수송할 수 있는 차량, 미국 주석 38(c) 열거 품목)에는 10%가 적용되고, 중대형 차량(제8701-8704-8705-8706-8709호, 미국 주석 38(b) 열거 품목)에는 25%가 적용됨

2) 반덤핑·상계관세와 기본관세/FTA는 중복 부과 되지 않음. 단, 301조와 기본관세/FTA 및 301조와 AD/CVD는 중복 부과 가능

3) 미국은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물품에 대해 25%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적용 대상: 배터리와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25%), 광물 자원(25%), 영구자석(25%), 반도체(50%), 태양전지(50%), 전기차(100%) 등

4) 제122조 임시 수입 추가세는 기본세율(MFN) 또는 FTA 세율에 추가되어 부과됨

5) 포고령 제11021호.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6) 2026년 1월 15일부터 적용. 제8471.50호·제8471.80호·제8473.30호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반도체에만 적용됨

7) 의약품의 경우 포고령 제11020호 부속서 3의 회사에는 7월 31일 이후, 그 외는 9월 29일 이후 100%, 한국은 협정에 따라 15%가 적용될 예정임

목재 및 파생상품의 경우 한국·EU·일본은 10% 또는 15%, 그 외는 10% 또는 25%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품목은 8)과 같음

8)

구분	2025.10.14.~	2027.01.01.~	비고	
가구	연목	10%	10%	
	목재가구	25%	30%	무역협정 원료국가 영국: 10% 한국·EU·일본: 15% (한국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적용)
	주방 캐비닛, 세면대	25%	50%	

* 기발표 내용을 기초로 변경된 상호관세율 반영(작성일자: 2026.01.26.)

1) 한국은 EU·일본과 동일한 15%로 합의(MFN 포함, 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

2) 반덤핑·상계관세와 기본관세/FTA는 중복 부과 되지 않음. 단, 301조와 기본관세/FTA 및 301조와 AD/CVD는 중복 부과 가능

3) 미국은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물품에 대해 25%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적용 대상: 배터리와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25%), 광물 자원(25%), 영구자석(25%), 반도체(50%), 태양전지(50%), 전기차(10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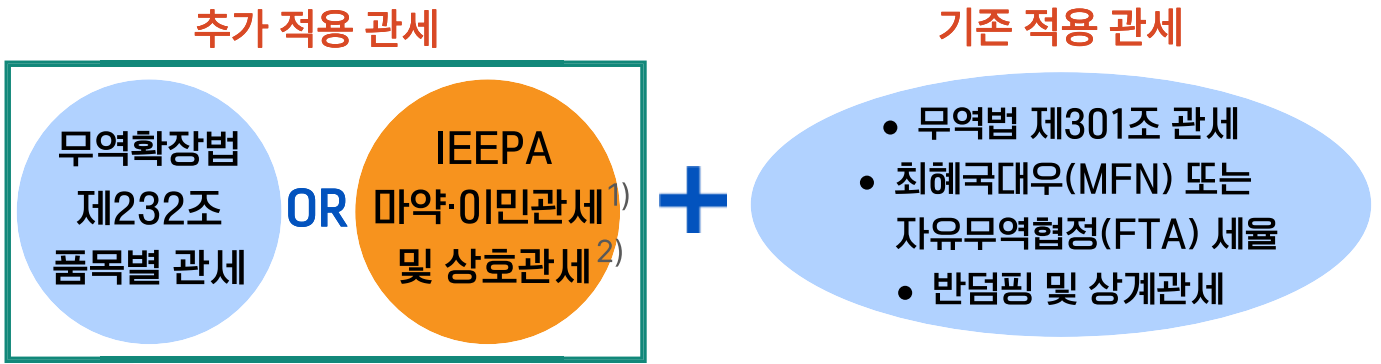
4) 한국·EU·일본은 MFN 15%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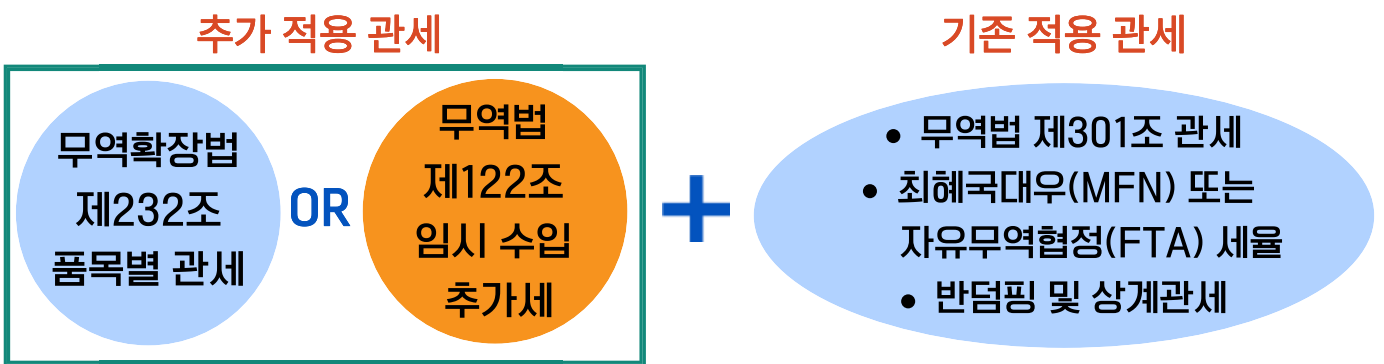
구분	2025.10.14.~	2027.01.01.~	비고	
가구	연목	10%	10%	
	목재가구	25%	30%	무역협정 원료국가 영국: 10% 한국·EU·일본: 15% (한국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적용)
	주방 캐비닛, 세면대	25%	50%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에 따른 관세부과 변화

기존 관세부과 구조



현재 관세부과 구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로 징수 종료되는 관세 ³⁾

2월 24일 동부표준시 오전 12시 1분 이후로 아래 IEEPA 관세 징수 종료

- 캐나다 물품에 대한 35% 마약관세 (행정명령 제14193호 등)
- 멕시코 물품에 대한 25% 마약관세 (행정명령 제14194호 등)
- 중국 물품에 대한 10% 마약관세 (행정명령 제14195호 등)
-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국 물품에 대한 25% 관세 (행정명령 제14245호)
- 국가별 상호관세 (행정명령 제14257호 등)
- 브라질 물품에 대한 40% 관세 (행정명령 제14323호)
- 인도 물품에 대한 추가 관세 (행정명령 제14329호 등)
- 쿠바에 석유를 판매·제공하는 국가 물품에 대한 추가 관세 (행정명령 제14380호)
- 이란 물품·서비스 수입국 물품에 대한 추가 관세 (행정명령 제14382호)

1) 중국 마약관세는 예외적으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제232조 관세에 추가 부과됨(행정명령 제14289호)

2) 철강, 알루미늄의 함량가치에는 제232조 관세가 부과되고, 비함량가치에는 상호관세가 부과됨

3) 행정명령 제14389호

* 환급 관련 진행상황

- 2026.3.4. 국제무역법원(CIT)은 미정산 및 미확정 정산 건에 대해 IEEPA 관세를 제외한 정산·재정산 명령
- 2026.3.20. 브라질 및 인도에 부과된 IEEPA 관세도 환급 대상에 포함됨을 확인
- 2026.3.27. 환급 대상 범위를 **최종 확정된 정산 건까지** 확대
- 2026.4.20. 세관 및 국경 보호청(CBP)은 자동화 상업 환경(ACE) 내 **환급처리시스템(CAPE) 1단계** 시행 예정
: 미정산 및 정산 후 80일 이내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 수입업자(IOR) 또는 권한 있는 통관대리인이 일괄 제출
→ 일괄 처리 및 세액 재산정 → 통상 60일~90일 내 차액과 이자 환급

새로이 부과되는 관세

무역법 제122조 임시 수입 추가세

- 1) 시기: 2월 24일부터 150일간
(2월 24일 동부표준시 오전 12시 1분부터 7월 24일 오전 12시 1분까지)⁴⁾
- 2) 대상: 전품목에 10% 임시 수입 추가세 부과
예외: 에너지, 의약품, 특정 농산물, 화폐 및 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무관세 품목 등
- 3) 누적 여부: 무역법 제122조 임시 수입 추가세가 기본 세율에 추가
→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중국에 비해 한국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
ex) [한국]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 10%
[중국, 일본] 최혜국대우(MFN) 세율 + 10%

국가	기본 관세	IEEPA 관세	제122조 임시 수입 추가세
한국	MFN/FTA	기본 관세 포함 15% ⁵⁾ (상호관세)	기본 관세 + 10%
일본	MFN	기본 관세 포함 15% ⁵⁾ (상호관세)	
중국	MFN	20% 10%(마약관세) + 10%(상호관세)	

4) 2월 24일 동부표준시 오전 12시 1분 이전 선적되고 2월 28일 오전 12시 1분 이전 통관을 완료한 물품은 제외

5) 기본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 상호관세 대신 해당 관세율로 부과함

제232조 부과 품목의 관세 변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무역법 제122조 임시 수입 추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아** IEEPA 폐지의 영향 없음.
- 다만, **중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 부과 품목에 IEEPA 마약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였으므로 **변화 발생**
- 총세율 기준에서는 한국, 일본이 여전히 경쟁우위를 유지함

국가	기본 관세 ⁶⁾	제232조 관세	현행
한국	MFN/FTA	기본 관세 포함 15% (무역합의)	기본 관세 포함 15% (무역합의)
일본	MFN		
중국	MFN +제301조(25~100%)	35% 25%(제232조관세) + 10%(마약관세)	35% -> 25% (마약관세 폐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 (이전) **함량가치** 부분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율로**, **비함량가치** 부분은 **IEEPA에서 정한 관세율로** 부과됨
- ('26.4.6. 이후) 함량가치 기준에서 **'전체과세 가격'** 기준으로 변경
- **원자재 중심**(부속서 1-A) **50%**, **파생제품 중심**(부속서 1-B) **25%**, **일부 산업 기계 등**(부속서 3) **15%** 적용됨
-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기본 세율에 제232조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는 구조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중국에 비해 **한국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
- 총세율 기준에서는 한국, 일본이 여전히 경쟁우위를 유지함

국가	기본 관세 ⁶⁾	제232조 관세	현행
한국	MFN/FTA	함량: 기본 관세 포함 50% (무역합의)	기본 관세 + 50%/25%/15% (제232조 관세)
일본	MFN	비함량: 기본 관세 포함 15% (상호관세, 무역합의)	
중국	MFN +제301조(25~100%)	함량: 50% (제232조) +10% (마약관세) 비함량: 10% +10% (상호·마약관세)	기본 관세 + 50%/25%/15% (제232조 관세)

6) 상계관세, 반덤핑관세는 제외하고 고려함

부록-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소송 경과

- ✓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1심 판결 (2025. 05. 28.)

 - IEEPA에 근거하여 시행된 관세조치는 위법하므로 무효(set aside)
 - ✓ IEEPA는 대통령에게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대해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함
- ✓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항소심 판결 (2025. 08. 29.)

 - IEEPA 관세조치는 위법하여 무효라는 1심 판결 유지
 - ✓ 다수의견(7인): IEEPA는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동의
 - ✓ 반대의견(4인): IEEPA의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 부과도 포함되며, 다수의견과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를 과도하게 제한 해석함
- ✓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판결 (2026.02.20.)

 - IEEPA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IEEPA 기반 관세조치는 법적 근거를 상실함
 - ✓ 다수의견(6인):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의회의 명확한 수권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IEEPA 기반 관세조치를 위법으로 판단
 핵심위법사유 ①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②IEEPA 권한부여 범위 ③역사적 관행부재
 - ✓ 반대의견(3인): IEEPA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외교·안보 맥락에서 다수의견 해석에 반대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대체할 수 있는 관세 부과 수단

→ IEEPA와 같은 포괄적 관세 부과를 즉각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현재 조사 중인 제232조, 제301조 관세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구분	무역확장법	무역법		관세법
	제232조	제301조	제122조	제338조
분류	19 U.S.C. § 1862	19 U.S.C. §§ 2411-20	19 U.S.C. § 2132	19 U.S.C. § 1338
전제조건	국가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수입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국제수지 문제	외국의 차별적 행위
요건	수량 또는 상황상 수입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 있음	무역협정상 권리 침해 or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부담	대규모 무역적자 or 국제수지 문제	대미 차별로 미국통상에 불리 + 공익에 부합
판정기관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USTR)	없음	없음
기간 제한	없음	4년 (연장 제한 없음)	150일	없음
관세율 상한	없음	없음	15%	50%
적용사례	2018~ - 철강·알루미늄 2025~ - 자동차·부품 - 철강·알루미늄 - 목재·파생상품 등	2018~ - 특정 중국 물품	2026~ - 전품목 - 임시 수입 추가세	사례 없음



중국의 무역통제 법제화 및 세관 행정처벌 동향

1. 국가안보 및 제재대응을 위한 법제정비

중국은 기존에 수출입 관리 및 산업 보호 중심으로 운영되던 통상정책을 최근 국가안보 및 제재 대응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대외무역법」 개정,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제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

- (대외통상 규제 대응조치·보복조치 제도화) 중국은 2026.3.1. 시행된 「대외무역법」을 통해 대외 제재에 대한 상응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안보 개념을 경제·산업 영역까지 확장하는 한편,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상시적 통제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연계
 - 대외 통상규제에 대응할수 있도록 '상응 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의 근거를 마련함(대외무역법 제10조)
 - 통상을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닌 국가 전략 수단으로 재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중국 대외무역법 개정 사항(요약)

구분	내용	관련 조문
1	대외 통상 규제 대응 기반 마련 - '상응 조치' 조항 신설 - 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 근거	제10조
2	국가 발전 이익을 안보로 간주 - '국가 안보'의 외연 확장 - 수출통제 및 금수 조치의 정당한 법적 근거	제1조, 제18조
3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도입 - '국가전략' 차원의 자국 산업 보호 기반 - 외국의 대중 제재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제55조
4	수출통제 법제와의 연계 강화 - '중국식 뉴노멀' 체계 구축 - 상시적 통제 체계(이중용도 품목 포함)	제73조
5	FTA 영역 확장 의지 - '디지털·녹색 무역' 법제화 -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 및 녹색 무역 건설	제60조, 제61조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세계법제정보센터

- (수출허가 관리범위의 확장) 중국의 수출 허가 관리는 일반 화물에 대한 「수출허가증」 체계와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기술 수출허가증」 체계로 구분
 - 일반 화물과 이중용도 화물에 동시에 적용될 경우 이중용도 허가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반출을 통해 수출이 가능한 구조²⁾
 -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심사가 강화되면서 광물과 같은 물품부터 기술, 장비,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까지 통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략 광물과 첨단산업 중심에서 일반 산업재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 (철강 등 특정 품목 허가 대상 재지정) 2026년 1월부터 철강 제품 약 300개 품목이 수출 허가 관리 대상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기존 선택적 통제에서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인³⁾
- (수출통제 품목 역외적용 및 우회거래 규제 확대) 중국 상무부는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중국산 통제 대상 물품이 포함된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요구하는 등 역외적용 범위를 확대⁴⁾
 - 중국 원산지의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재료 제조, 희토류 재자원화 관련 기술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은 함량과 관계없이 통제 대상에 포함
 -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기술 이전, 장비 제공 등 간접적 거래 형태도 통제 대상

1)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12.27

2) 《出口许可证管理货物目录（2024年）》的公告, 商务部·海关总署, 2023年 第65号, 2023.12.29.

3) 《公布对部分钢铁产品实施出口许可证管理》, 商务部·海关总署, 2025年 第79号, 2025.12.09.

4) 《公布对境外相关稀土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 商务部, 2025年 第61号, 2025.10.09.

→ (요약) 중국산 통제 대상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후, 중국 외의 다른 국가로 수출 할 경우 중국산 사용 비중이 0.1% 이상일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61호 공고 제1조 1항)

2. 국가별 통상 규제 대응 조치

- ☑ (미국 : 관세·비관세 대응 병행)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및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은 관세 및 비관세 수단을 결합한 대응 전략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마약(펜타닐) 관세 적용으로 시작된 무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율 조정과 비관세 조치를 병행함**

 - (관세대응)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중국은 2025년 2~3월 일부 품목에 대한 **선택적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 4월 10일부터는 모든 미국산 품목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후 84%, 125%까지 상향되었다가 협상을 통해 약 **10% 수준으로 조정되는 등 유동적으로 운용됨**
 - (비관세대응) 중국은 2025년 4월 4일 미국 기업을 자국의 수출통제 관리 목록에 포함하는 등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

➔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관세 대응(보복관세)과 비관세 대응(기업 제재)**이 결합한 점이 특징으로, 필요시 '유예 조치'를 활용하여 압박과 협상력을 동시에 유지하는 유동적 대응 전략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 (EU: 무역구제 수단 활용) 2023년 10월 4일, EU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조사를 공식적으로 착수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EU산 **브랜드,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

 - (브랜드) 중국은 EU산 브랜드에 대해 2024년 1월 5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25년 7월 4일 최종적으로 덤핑과 실질적 손해 위험 및 인과관계를 확정, 7월 5일부터 27.7%에서 34.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 (돼지고기) 중국은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해 2024년 6월 17일 조사를 개시하였고, 2025년 12월 16일 최종적으로 4.9%에서 19.8%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
 - (유제품) 중국은 EU산 유제품에 대해 2025년 12월 23일부터 21.9%에서 42.7% 수준의 잠정 **반보조금 조치**를 시행하였고, 2026년 2월 12일 최종적으로 확정

➔ 중국의 EU산 브랜드,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 특정 국가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가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징

- ☑ (일본: 포괄적 수출 금수 조치) 중국 상무부는 2026년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고, 이를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

 - (대응) 중국은 일본의 군사적 목적에 사용 또는 군사력 증강에 기여가 가능한 **모든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
 - 1월 7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DCS)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및 2월 2일 조사질문서를 발부
 - 2월 24일 일본 기업 20개 사를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와 일반 산업용 수출 물품의 허가 배제 등 조치를 병행 시행

➔ 중국의 일본 대상 통제 조치는 단순한 정치적 경고 수준을 넘어 이중용도 품목에서 **일반 산업의 무역구제 조사로 확대**되는 점이 특징

3. 세관 관리·감독 및 행정 처벌 강화

- ☑ 중국의 관세행정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통제 및 수출·수입 전체 과정에 대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세관은 수출통제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사전적 의심**을 제기하고, 기업에 입증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채굴, 가공, 운송, 수출에 이르는 **산업체인 전체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또한 행정 처벌 체계에서는 초범 및 경미한 위반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전략 물자 밀수, 수출통제 위반, 수출환급 사기 등 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고액 추징**을 병행하고 있음

➔ 실제로 전략 광물 밀수 사건, 원산지 허위신고, 수출환급 사기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면서 내부 단속의 강도가 **지속 강화**되고 있음

최근 행정 처벌 주요 사례

2025년 중국 세관 행정처벌 사례 ⁵⁾

1. 개요
 - 2025년 최근 1년간 13개 직속 해관이 공개한 행정처벌 2,096건을 바탕으로 정리 및 요약
 - (유형) 원산지 허위신고, 품목분류 오류, 관계사 거래가격 저가신고 등
2. 범행 목적
 - 원산지 허위신고 사례는 주로 대미 추가 관세 회피 목적이 핵심
 - 품목분류 오류 및 거래가격 저가신고를 통한 과세가격 인하에 따른 관세 절감 목적
3. 범행 수법
 - 미국산 화물을 홍콩·태국 등 제3국으로 우회하여, 운송수단과 서류를 변경하여 원산지를 제3국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
 - 중국 세관은 이를 단순 오신고가 아닌 고의적 관세 회피 행위로 간주
4. 행정 처벌
 - 탈루 세액 약 3,246만 위안(한화 약 71억)이 인정
 - 적발 화물을 몰수하지 않고 추징금 약 1.13억 위안(한화 약 246억) 처분

→ 이는 대미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및 원산지 조작 행위에 대해 중국 세관이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닌 고의적 관세 회피로 판단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전략 물자(광물) 밀수출 사건 ⁶⁾

1. 일시·장소
 - 2025년 12월 16일, 상하이(上海市)와 심천시(深圳市)
 - 상하이(上海市) 제3중급인민법원과 심천시(深圳市) 중급인민법원이 관련 사건을 공개 선고
2. 사건 개요
 - (상해) 2023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전략광물 325톤 이상을 무허가 상태에서 허위신고 방식으로 수출
 - (심천) 2025년 2~3월 안티몬 잉곳 166톤 이상을 은닉·위장·허위신고 방식으로 밀수출
3. 범행 목적
 -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 없이 전략 광물을 해외로 반출하여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
 - "대미 관세 회피"처럼 구체적 정책 목적보다, 무허가 수출을 통한 불법 이익 추구가 직접적 동기
4. 범행 수법
 - 품명 허위신고, 화물 은닉, 위장 적재 등으로 세관의 관리·감독을 회피
5. 행정 처벌
 - (상해) 사건 주범은 징역 17년 및 벌금 600만 위안(한화 약 12억), 공범도 징역 또는 구류와 벌금형
 - (심천) 사건 주범은 징역 12년 및 벌금 100만 위안(한화 약 2억), 공범도 징역 또는 구류와 벌금형

→ 전략광물의 경우 수출허가 없이 반출 시 형사처벌이 병행되는 등 단속 수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수출통제 정책이 실질적인 형사집행 단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수출환급 사기 적발 ⁷⁾

1. 일시·장소
 - 2026년 2월 27일, 국가세무총국
 - 천진(天津), 흑룡강(黑龙江), 귀주(贵州), 중경(重庆) 등 총 4건
2. 범행 목적
 - 모두 핵심 목적은 허위 수출거래와 허위 증빙을 이용해 국가의 수출환급세를 편취
 - 실제 무역 활동보다 세금 환급금 자체를 부당 취득하는 것이 직접적 목적
3. 범행 수법
 - 허위 매매계약 체결, 타인 수출신고서 정보 매입, 허위 증치세 전용발표 수취, 허위 결제, 지하금융 통한 허위 외환 결제 등의 방식
4. 행정 처벌
 - (천진) 2.01억 위안(한화 약 438억) 추징 및 3년간 환급정지, 관련자 6명 기소
 - (흑룡강) 6,697.45만 위안(한화 약 147억) 추징 및 3년간 환급정지, 주범은 징역 15년
 - (귀주) 5,465.09만 위안(한화 약 120억) 추징 및 3년간 환급정지, 주범은 징역 13년 및 전 재산 몰수
 - (중경) 183.16만 위안(한화 약 4억) 추징 및 19개월 환급정지, 관련자 4명 기소

→ 수출환급 제도를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형사조치를 병행하고 있어, 단순 세무 위반을 넘어 국가 재정 및 무역질서 침해 행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5) 《近期海关行政处罚常发案例的法律分析》, 北京德和衡律师事务所(북경소재 로펌), 2025.12.12.

6) 《走私锑锭166余吨, 主犯一审被判12年, 另有26人获刑》, Finance Sina(언론), 2025.12.16.

7) 《税务部门曝光4起骗取出口退税违法案件 最高涉案金额超2亿元》, Xinhua(언론), 2026.02.27.

4. 통관 실무 및 원산지 관리 영향

- ✔ 중국 수출·입 통관 실무는 **관세정책, 수출통제, 무역구제 조치가 결합**한 복합적 관리 체계로 변화하고 있음
- (**통관과정 기업 책임 증가**) 기존 HS Code 중심의 형식적 요건 심사에서 벗어나, 품목의 기술 사양, 성분, 기능,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 특히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중국 수출기업에 **사전적 검토 책임**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세관은 수출 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물품이 통제 대상일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질의통지를 발부할 수 있고, 수출기업은 일정 기간 내 물품이 **통제 비대상임을 입증**해야 함 (입증 불가 시 통관 제한)
 -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허가 재도입과 같이 품목별 허가 관리가 확대되면서, 통관 절차에 **사전 허가 확인**과 같은 세관의 관리가 추가되고 있음
 - 따라서 기업은 HS 품목분류, 관세율, 자유무역협정 활용 등 기존 검토 사항에 수출 허가 대상 여부, 최종사용자 확인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등 통관 실무가 단순 신고에서 벗어나 **중국 내부 통제와 사전적 리스크 관리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음
- (**원산지 위반 처벌 강화**) 미국산 물품이 홍콩과 태국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반입이 적발된 건과 같이 운송수단과 서류를 조작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관세 회피 사례에 대한 **원산지 조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음
- ➔ 중국의 관세 및 통상 정책은 최근 관세 조정, 수출통제, 무역구제 조치가 결합된 복합적 관리 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응하여 정책 수단을 유동적으로 운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 이에 따라 기업은 단순 관세율 변화뿐 아니라 수출허가 대상 여부,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등 **비관세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에도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한 통제 및 단속 강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